

鶴峯 金誠一의 祭禮 意識과 行禮

유영옥*

|| 차 례 ||

1. 머리말
2. 祖先숭배와 保宗의식
3. 禮書와 時俗의 수용과 절충
 - 1) 宗法의 실행과 한계
 - 2) 時祭와 墓祭의 양상
4. 禮宜從厚의 경향
5. 맷음말

【국문초록】

本考는 퇴계의 及門弟子 鶴峯 金誠一의 禮學을 推尋하여 脊椎학맥 연구에 일조하기 위해, 鶴峯集과 義城金氏 川前派의 古文書를 통하여 그의 祭禮 意識과 行禮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봉의 부친 靑溪公은 宗家가 궁핍함으로써 비롯되는 祭祀의 廢止를 막고자 祭需 비용을 낙제하고자 마련하는 등 祖先숭배와 保宗의식이 뚜렷하였다. 학봉도 이러한 家學에 영향 받아 宗家 保衛과 조상에 대한 享祀를 특히 중시하였다.

학봉은 제례에 있어서 禮經·禮書를 존중하되, 당대의 時俗과 國制도 아울러 수용하여 兩者를 절충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脊椎 禮學의 특징이기도 한데, 학봉은 스승 脊椎와의 禮疑問答을 통해 자신의 禮論을 정립시켜 나간 것이다.

朱子『家禮』의 제례는 크게 時祭·忌祭·墓祭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사당에서의 四時祭가 제일 중요하고, 代盡한 조상에게 지내는 묘제의 비중이 가장 낮다. 하지만 당시 조선사회는 시제보다 묘제를 중시하였고, 기제사도 『가례』의 4대 봉사와 달리 3대 봉사를 하고 있었으며 또 자손들의 윤회봉사가 시행되고 있었다.

* 부산대학교 강사

이에 학봉은 먼저 『가례』를 기본으로 삼아, 時祭를 중시하고 代蟲한 조상의 묘제를 1년에 1번 준행하고자 하였다. 또 禮官從厚의 뜻으로 3대 봉사를 4대 봉사로 전환하여 「奉先諸規」에 수록함으로써 가문의 예법으로 정식화하였다. 다음으로, 俗禮와 時王之制에도 순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簡日祭나 4名日묘제 등을 준수하였고, 기세사를 사당에서 지내도록 하되 여전히 윤회봉사를 따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학봉은 敦厚한 人情으로 行禮하면서 부단히 禮書와 通俗의 조화를 모색해 나갔다.

주제어 鶴峯, 退溪, 義城金氏 川前派의 古文書, 「奉先諸規」, 『家禮』, 時祭, 墓祭,
4代 奉祀

1. 머리말

義城人 鶴峯 金誠一은 西厓 柳成龍과 月川 趙穆과 함께 退溪 문하의 세 領袖라 일컬어지는 及門의 高弟이다. 김성일은 溪門에 從遊하여 性理哲學뿐 아니라 禮學에도 깊은 學的 관심을 두고 절차탁마했다.¹⁾ 그의 文集에 수록된, 師弟간에 禮制를 논한 수십 조목의 問答이나 「奉先諸規」와 「吉凶慶弔諸規」 및 「喪禮考證」 등을 보면,²⁾ 학봉 학문의 정수가 禮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여겨진다.³⁾

1) 『退溪全集』「退陶先生言行通錄」所載 총 663건의 언행록 가운데, 기록을 제공한 14명의 문인 중 학봉의 기록이 19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198건 중 論氣論은 5건인데 비해, 論禮制는 25건으로 비중이 제일 높았다. : 李相殷, 「鶴峯先生의 學問思想의 傾向」『退溪門下 6哲의 삶과 사상』,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예문서원, 1999, 118~119쪽 참조.

2) 鶴峯의 文集에는 「上退溪先生問目」과 「退溪先生言行錄」에 기재된 禮疑問答, 그의 禮의식과 실천을 보여주는 行狀 기록, 1581년 父親喪의 여묘살이 도중에 저술한 「喪禮考證」과 편지 「與或人」, 1587년에 작성한 「奉先諸規」와 「吉凶慶弔諸規」, 1590년 일본 使行 時 倭僧 宗陳에게 지어준 「朝鮮國沿革考異」 등 예학 관련 내용이 다수 산재되어 있다.

3) 金彥鉉, 「鶴峯先生의 禮學」『退溪門下 6哲의 삶과 사상』,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지금까지 퇴계학맥에 대한 연구는 『陶山及門諸賢錄』을 중심으로 다방면에서 지속되어 왔지만, 학봉의 예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⁴⁾ 이에 本考는 학봉의 제례 의식에 주목하여 退溪 禮說의 주요 계승자로서의 학봉 예학을 단편적이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서두에 한 가지 언급할 것은 그 동안 師承관계나 學統 논의에서 등한시되었던 고문서 자료를 本考의 논지 전개에서는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고문서 자료는 사회경제사나 생활사 연구 분야에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學問과 思想 분야에도 다양한 접근을 가능케 하는 매력적인 기록이다. 義城金氏 川前派의 일부 고문서를 통해⁵⁾ 門中 享祀의 제반 양상을 참고한다면, 학봉 禮學의 이론과 실천을 보다 정밀하게 推尋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영남지역 퇴계학맥의 研覈에 하나의 試論이 되고자 한다.

2. 祖先숭배와 保宗의식

祭祀의 禮는 聖人이 못 다한 봉양을 행하고 못 다한 효도를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 天性에 근본을 둔 것이다.⁶⁾ 의성김씨 천전파는 영남지역에서도

예문서원, 1999, 164쪽 참조.

4) 李相殷, 「鶴峯先生의 學問思想의 傾向」『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言行錄을 中心으로 한 考察』, 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 1993.(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退溪門下 6哲의 삶과 사상』, 예문서원, 1999, 재수록)

金彥鍾, 「鶴峯先生의 禮學」『鶴峯의 學問과 救國活動』, 鶴峯金先生紀念事業會, 1993.(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退溪門下 6哲의 삶과 사상』, 예문서원, 1999, 재수록)

5) 의성김씨 천전파(내앞파)는 17대 萬謹(학봉 증조부)이 海州吳氏와 혼인하면서부터 안동부 臨河縣 川前里에 자리를 잡았다. 천전파는 안동에 정착한 이래 400여 년간 안동의 大姓·望族으로 세거하면서 퇴계학파의 적통연원가로서 영남사람의 논의를 주도해왔다. 이러한 명문대가의 지위를 입증하듯 傳存해온 고문서도 분량이 방대하다. : 박병호, 「제8장 공정성의 개념과 실천」『조선양반의 생활세계 -義城金氏 川前派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백산서당, 2004, 422쪽 참조.

조상승배와 宗家 중시의 경향이 대대로 매우 강했다.⁷⁾ 이는 학봉의 부친에
게서 확연히 드러난다. 김성일의 祭禮 意識과 行禮에는 일차적으로 家學
의 영향력을 끊을 일이다.

학봉의 부친 靑溪公 金璡(1500~1580)은 16세에 고모부인 安東權氏
幹에게 배우고, 驪興閔氏 世卿의 사위가 되어 처숙부인 현량과 출신의 世
貞에게 학문을 익혔다. 중종 20년(1525) 司馬試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수학했으나, 出仕하지 않고 향리로 돌아와 傅巖서당을 세워 자제들을 교육
하였다.

김진은 5남 3녀의 적자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藥峯 克一(1522~1585)
이며, 그 아래로 龜峯 守一(1528~1583), 雲巖 明一(1534~1570), 鶴
峯 誠一(1538~1593), 南嶽 復一(1541~1591)이 있다. 장남과 4남·5
남이 文科에 급제하고, 차남과 3남이 사마시에 登科했을 뿐 아니라, 5형제
가 李滉의 문하에 출입함으로써⁸⁾ 영남의 名家로 三族의 지위를 굳혔다.

김진은 무당과 같은 淫事를 배척하며 향촌사회에 성리학 이념을 정착시
키고자 노력했는데, 특히 평소 제사를 매우 삼가서 엄숙과 공경을 다하였
고, 매번 자손들에게 가르치기를 “가문의 興廢는 반드시 제사를 반드시 받드는 데
서 말미암으니, 어찌 제사를 삼가지 않으면서 복을 누리는 자가 있겠는가?”
하였다.⁹⁾

학봉도 제사를 중시하여 “父兄이 子弟의 독서를 중히 여겨 家廟의 제사

6) 『禮記』『祭統』 제25, “祭者，所以追養繼孝也。”

許傳, 『上儀』 권14, 如在篇 1, “祭祀之禮 壬人所以追養繼孝 本天性者也。”

7) 문옥표·김광익, 「제2장 종족조직과 생활문화」『조선양반의 생활세계』, 백산서당,
2004, 64쪽, 90~93쪽 참조.

8) 5형제의 이름이 모두 『陶山及門諸賢錄』에 올라 있다.

9) 『鶴峯先生文集』 권7, 行狀, “先考成均生員府君行狀”… 平居尤謹於祭祀 齊三日
戒飭內外 無敢喧譁 蔭事嚴敬 人莫敢仰視 每教子孫曰 人家興廢 必由祭祀 豈有
祭祀不謹 而能享其福者乎.”

때 山房에 있거나 혹은 근처에 있는데도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니, 마음에 매우 미안”¹⁰⁾하다고 하였다. 학봉은 아무리 학문이 중하더라도 제사 참배를 하지 않는 일에 미편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祭禮는 冠·婚·喪禮와는 달리 매년 정기적으로 거행되는 禮制이다. 또 당시에는 時祭, 忌祭, 四名日祭, 節日祭, 墓祭, 朔望茶禮 등 祭享이 매우 빈번하였다. 따라서 우선 祭需 비용이 마련되어야 祭享을 闕하거나 罷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유달리 尊祖重宗을 강조하던 청계공은 제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多量의 祭位田을 마련하여 영구히 봉사손에게 물려주게 하였다.

만력 5년 정축 윤8월 17일 여러 자식에게 유언을 남기는 일은, 임하·수곡·신곡의 노비와 전답은 이미 일찍이 내가 직접 준 것으로서 움직이지 말거니와, 청기의 전답은 첨자녀에게 조금씩 분급하고, 그 나머지 40여 섬지기는 봉사 자손에게 傳給한다. 봉사자가 아들이 없거든 계후자에게, 繼後하지 않으면 次子에게 준다. 이전에 (정해놓은) 承重(條)는 그대로 두고 이곳의 전답과 집을 더 주는 일은, 내 자손들이 그 수가 적지 않으므로 제삿날 집에 가득히 모일 것이며, 노복들은 뜰에 가득할 것이고 말은 마굿간에 가득할 것인데, 宗子가 빙궁하면 그들을 공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 때문에 節祀가 때를 잃는 경우가 많을까 염려된다. 원컨대 내 자손들은 공경히 내 뜻을 받들어 세세도록 전하여 폐하지 않도록 한다면 심히 다행이겠노라.

가사전답주 자필 생원 김진 (수결)

유언

세상 사람들을 보면, 宗家는 殘劣하고 衆子들은 豪猾하여, 소를 잡지 않으면 祭物을 갖추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종기를 侵責하는 자가 즐비하다. 宗子가 가난하면 비록 닦 한 마리를 잡고 □ 하나를 삶더라도 제삿달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산이 넉넉한데도 가묘 제사에 삼가지 않고 부처에게 아첨하

10) 『鶴峯先生文集續集』 권4, 書, 「上退溪先生問目:乙丑」“父兄以子弟讀書爲重 家廟祭祀之時 或在山房 或處旁近 而不令與祭 於心甚未安。”

며 淫祀를 일삼는 자가 많다. 이런 자는 여럿이 꾸짖고, 그 놈에게 장 100대를 친다. (수결) 11)

위의 分財記는 청계공이 죽 하기 3년 전인 선조 10년(1577) 自筆로 작성하여 남긴 [遺言]이다.¹²⁾ 조상 제사를 공경히 모시며 가난해도 제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대목에서 청계공의 禮制의식이 직설적으로 드러난다. 또 드센 衆子들이 허약한 宗孫을 침책하는 세태에 宗家의 곤궁을 염려하여 奉祀條를 두고 있으니, 保宗의식도 뚜렷하다.

청계공은 婦妻에서 8남매를 두고 첨자 衍一과 서얼 딸 2명을 더 두어, 자손이 무척 번성한 편이다. 이 때문에 차후로 종손이 빙궁하여 子孫 공동 참여의 奉祀 행사가 궁색할 것을 걱정해서, 자신의 承重子에게만 오로지 전답을 넉넉히 주어 祖先奉祀에 힘쓰도록 하고, 세세도록 종가에 永屬함을 후손들에게 주지시켰다.

11) 『古文書集成 6 -義城金氏川上各派篇(II)』,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137쪽, [分財記 15].

萬曆五年丁丑閏八月十七日 諸子息亦中 遺言成置事段 臨河水谷中谷奴婢田畠 已曾親給樣以 不動事在果 青杞田畠段 妻子女等 小小分給爲遣 其餘四十餘石落種
庫乙良 奉祀子孫以專給爲去乎 奉祀子無後爲去等 繼後子 無繼後 則次子爲之爲乎矣 已前承重乙良 不動爲遣 以此處田畠家舍加給事段 苦子孫其儼不小 祭祀之日 群集滿堂 奴僕盈庭 鞍馬牋廄 宗子貧窮 則供饋難支 以此爲慮節祀失時者多矣
願吾子孫 敬奉吾意 世世傳之無廢 幸甚

家舍田畠主 自筆 生員 金璉 (手決)

遺言

看世上人 宗家殘劣 衆子豪猾 則以頹牛不冬 祭物不備稱云 伎責宗家者 比比有之
宗子貧窮 則雖殺一雞烹一□ 毋虛過祭月可也 然財富而不謹家廟祭祀 以媚佛淫祀
爲事者多 此則衆攻之可 枝奴一百 (手決)

12) 金璉은 이 [유언]보다 석 달 앞인 6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유언]을 작성하였다. 내용은 6월에 작성된 것이 조금 더 상세하다. 6월의 [유언]에는 청기 소재 '大田畠 40여石落'이라 되어 있고, 臨河에 이미 承重條를 두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또 청기 소재 전답은 땅이 멀고役이 부거워, 자녀들에게細分하면役價를 감당하기 어렵지만 承重子에게만 수여하면 편찮을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 李樹健, 『慶北地方古文書集成』, 儒南大學校出版部, 1981, 171쪽, [金璉 許與文記].

김진은 父母 兩邊과 妻家로부터 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안동의 임하·수곡·신곡, 영양의 청기 등에 토지를 소유했고, 강릉부 소재 金光坪에도 땅을立案 받아 동서 10리, 남북 10리의 광활한 農地를 보유함으로써 집안 융성의 밑거름이 될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였다.¹³⁾ 이 많은 토지 중에 청기를 奉祀條로 선택한 것은 이미 임하 등지의 노비와 전답은 적자녀들에게 다 분급해버렸고, 강릉의 금광평은 소유권만 확립되어 아직 실질적으로 居家하거나 개간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¹⁴⁾ 반면, 영양의 靑杞縣¹⁵⁾은 청계공 윗대에서 갈라져 나간 派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말년의 청계공 자신이 寓居하면서 개간하고 勸農하여 소출이 상당했던 땅이었다.¹⁶⁾ 그래서 아직 재산을 분급해주지 못한 첨자녀들에게 조금씩 분급하고 그 나머지를 제위전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청계공이 종손의 곤궁을 걱정할 만큼 청계의 長子가 가난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장남 극일은 적지 않은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다. 청계가 소유한 전답의 수량이나 자녀들이 許與받은 재산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문서는 없다. 학봉 집안은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해 적어도 학봉 兩

13)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152쪽 참조.

14) 김진은 강릉부 남쪽의 금광평에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기로 계획했는데, 혹 타인들이 경작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 땅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종 26년(1531) 8월 7일 강릉부사에게立案을 신청해 입안을 성급하겠다는 題辭를 받았다. 이 입안은 無主地 취득을 위한 입안이다. 하지만 그 후 이 땅은 궁방에 귀속되어버려 기실 소유권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래서 영조 2년(1726)부터 이를 되찾고자 하는 所志를 官에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 박병호, 「제8장 공정성의 개념과 실천」『조선양반의 생활세계』, 백산서당, 2004, 429~437쪽 참조.

15) 청기현은 당시 영해부 소속으로 안동부 임하현과 접경해 있었다.

16) 『鶴峯先生文集』 권7, 行狀, 「先考成均生員府君行狀」“말년에 寧海의 청기현을 유람하고는 그 곳 산골짜기가 그윽하고도 한적하며, 또 뉘시질하거나 빨갈이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곳으로 이사해 살면서 항상 종들에게 농사일을 권장하는 것을 일삼았다. 이에 곡식을 수확하는 것이 많았는데, 이를 쌓아두지 않고 자손이나 종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주었다.”

代에는 재산급여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 한다.¹⁷⁾ 그렇더라도 청계공의 재산이 방대했기에 자녀들에게 균분되었을 데도 상당했으리라 여겨진다. 게다가 약봉은 일찍이 조부인 秉節校尉 禮範에게서 登科를 이유로 노비 5口와 전답 2곳을 별급받았고,¹⁸⁾ 처가로부터는 매우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 약봉은 서울에서 遂安李氏 歲의 딸과 혼인했는데, 그가 平海郡守로 있을 때 처가로부터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 엄청난 규모의 전답을 분배받았다.¹⁹⁾

이와 같이 김진이 유언을 내기 전에 이미 宗家가 될 약봉의 실림은 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김진은 종손 집안에 영구불변의 재원을 마련하여 올타리를 더욱 튼튼히 해주었다. 이것이 바로 尊祖敬宗 의식에 투철한 청계의 면모이다.

청계 사후 학봉 형제와 사촌 등이 모여 결정한 문중의 完議에서도 가난한 종가를 위해 별도의 전답을 마련하여 가묘의 四仲月 제사를 폐하지 않도록 문서화하였다.²⁰⁾ 제사 폐지는 기본적으로 궁핍한 데서 오기 십상이니,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여 保宗과 奉祀에 만전을 기하자는 것이었다.

17) 『鶴峯先生文集』 권7, 行狀, 「先考成均生員府君行狀」 “아버지께서는 형제들 사이의 우애가 아주 두터웠다. 조부께서 미처 재산을 나누어주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아버지께서 마지기 수를 헤아려서 토지를 나누었는데, 몹시 공평하여 弟妹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모두 말로만 나누고 문서로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대개 말로 문서를 대신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집안에서는 몇 대가 내려오도록 契券이 없는데도 한 번도 재산 문제로 서로 다투는 일이 없다.”

『鶴峯先生文集續集』 권1, 詩, 「與長兒渙」 “兩代無契券 疏爭普明田.”

18) 『慶北地方古文書集成』, 430쪽, [金禮範 別給文記: 1549].

19) 『古文書集成 6』, 126쪽, [分財記 1]은 명종 14년(1559) 6월 29일 김극일 처 이씨에게 이씨의 부친이 노비 211를 별급하는 문기. : 127쪽, [分財記 2]는 명종 19년(1564) 정월 김극일 처의 형제자매들이 和會하여 재산을 나누는 문기. 김극일의 처 이씨 째은 논 189斗落只 1/2口耕, 밭 73마지기 2口耕 16卜으로, 토지 양면 비교하면 그녀가 제일 많다. : 128쪽, [分財記 3]은 명종 19년 윤2월 초9일 김극일 처의 前母 李氏 소유의 전답을 극일 처의 同腹과 前母의 本族이 均分하는 문기. 극일 처의 째은 논 13마지기, 밭 2일경.

20) 『古文書集成 6』, 99~100쪽, [完議 17].

이는 『가례』 '置祭田'²¹⁾조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며, 학봉 집안의 실천적 禮 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崇祖保宗의 전통을 더욱 확고부동하게 만든 사람은 학봉이었다. 학봉은 안으로 부친에게 奉先에 致誠하고 종가를 衛護할 것을 배우고, 밖으로 스승의 重宗 노력을 자양분 삼아,²²⁾ 慎終追遠의 정성과 宗家 중시의 의리를 돋독히 하였다.

일찍이 탄식하기를 “宗子法이 폐지되어 풍속이 더욱 나빠졌다. 지금 비록 갑자기 宗法을 세울 수는 없지만, 종가를 중시하는 의리는 알게 해야 한다” 하였다. 이에 문중의 길·홍례를 모두 종자가 주관하게 하였다.²³⁾

그는 進의 逝世 후 7년이 되는 선조 20년(1587) 겨울 종택이 화재로 소실되자 곧바로 자손들에게 米布를 거두어 지금의 대종택 건립을 직접 감독하였다.²⁴⁾ 연이어 「奉先諸規」를 지어 문중의 定式으로 삼아, 가묘의 時祭에 연고없이 불참한 사람은 엄히 처벌하고, 시제에 참여하는 자손들은 각자 그 철에 나는 제수품을 수확하는 대로 종가에 주어 제수 비용을 돋게 하였다.²⁵⁾ 동시에 「吉凶慶弔諸規」를 지어 동기간에 상부상조하는 睦族의 전

21) 『家禮』「通禮」祠堂 '置祭田' “初立祠堂 則計見田 每龕取其二十之一 以爲祭田 親盡則以爲墓田。”

22) 『鶴峯先生文集續集』 권5, 雜著, 「退溪先生言行錄」에는 막내였던 퇴계가 자기의 종가가 퇴락하고 가묘에서의 제사가 어렵게 되자 주동적으로 노력하여 타지에 거주하던 종손 李宗道를 환거케 하고 종가를 수리하는 데 재정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고, 종가의 墓田에 적합한 땅을 어느 族姪이 사버리자 傷心했다는 기록도 있다. : 金彦鍾, 「鶴峯先生의 禮學」『退溪門下 6哲의 삶과 사상』, 예문서원, 1999, 203쪽 참조.

23) 『鶴峯先生文集附錄』 권2, 「行狀」“嘗歎曰 宗子法廢 而風俗益偷 今雖不能猝立宗法 亦可使知重宗之義 於是 門中吉凶之禮。”

24) 극일·수일·명일은 이미 작고했고, 이우·복일은 율산군수로 외지에 나가 있었다. 성일은 休官중이라 공사의 일체를 직접 감독하였다. 예전 제도 그대로 복원되며, 대청은 더 넓혀서 奉祭祀에 편하도록 하였다. : 『鶴峯先生文集附錄』 권2, 「行狀」참조.

통을 잘 계승하도록 후손들을 타일렀다.²⁶⁾ 형제간의 敦睦과 제사 奉審에 심혈을 기울이는 학봉의 정성은 청계파 종족의 특색이 되어 가문의 내적 통합을 구현하는 데 일조하였다.

3. 禮書와 時俗의 수용과 절충

퇴계의 예학 태도는 朱子의 『家禮』만을 추종하지 않는다. 『儀禮』『禮記』 등과 같은 古經에 침잠하여 禮의 근원을 이해했기에, 朱子 이전의 宋儒들이나 『國朝五禮儀』 등 國制와의 조화를 꾀하였다.²⁷⁾

퇴계 예학의 이러한 특징은 高足弟子 학봉에게 고스란히 전수되었다. 당시의 사대부들이 대개 『가례』를 준봉했던 것과는 달리²⁸⁾ 학봉은 朱子說을 우선시하되 다른 여러 禮書들을 참고하였다.²⁹⁾ 哀葬禮의 절목은 『의례』,

25) 『鶴峯先生文集』 권7, 雜著, 「奉先諸規」 1·7조.

26) 『鶴峯先生文集』 권7, 雜著, 「吉凶慶弔諸規」는 총 5조목인데, 앞의 세 조목은 婚禮·喪葬·避諱할 때 친족들이 扶助하는 규정이고, 네 번째 조목은子弟들이 正朝에 父兄과 爽長을 찾아뵙는 등 예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며, 마지막 조목은 지금까지 집안이 회복했지만 앞으로 혹 형제와 친척간에 論爭을 하거나 재산 싸움으로 반목하는 일이 있운까봐 경계하는 조목이다.

27) 劉權鉢, 「동양한문학회 제82차 학술발표회자료집」, 2005.2.18, 3쪽 참조. : 따라서 퇴계 이후의 남인 예학이 『가례』를 절대시하는 쪽으로 발전하기보다는 古經에 나타난 古禮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유지했다고 여겨진다.

28) 『가례』가 본디 朱子의 손에 편찬된 것이기는 하지만, 초기의 편찬에는 司馬光의 『書儀』를準用하면서 미처 고치지 못한 곳이 많아 朱子가 다른 저술에서 논한 예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임찌부터 先儒들이 지적하던 비었다. : 鄭景柱, 「性齋 許傳의 士儀 禮說에 대하여」『東洋漢文學研究』 19, 2004, 260쪽.

29) 金彥鉢, 「鶴峯先生의 禮學」, 『退溪門下 6哲의 삶과 사상』, 예문서원, 217·239쪽 참조. : 특히 학봉의 『喪禮考證』은 『가례』의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해 『家禮』『喪禮』 편에 직접 관련된 『禮記』의 정리를 조목마다 찾아내어 그 근거를 밝혀 놓은 것으로,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학봉의 이 저작은 주자의 『가례』가 미비한 책이라는 각성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예기』, 당나라 杜佑의 『通典』, 명나라 丘濬의 『家禮儀節』 등을 참고하였고,³⁰⁾ 奉先儀 및 吉凶慶弔 의식에서도 주자설에 기준하되 諸儒의 의논들을 참작하였다.³¹⁾

학봉은 스승 퇴계와의 禮疑問答을 통해 자신의 이러한 禮論을 정립시켜 나갔다. 『학봉집』에 수록된 여섯 통의 「上退溪先生問目」 중 다섯 통은 禮疑에 관한 問目인데, 1565년에 올린 두 통의 문목³²⁾에는 제례에 관련된 질의 응답이 수록되어 있다.³³⁾ 또 『학봉집』 소제 「退溪先生言行錄」에도 제례에 관한 問答이 일부 기재되어 있다.³⁴⁾

祭禮의 問目에서 보이는 학봉의 짧은 知性은 古禮와 『家禮』와의 불일치, 時俗과 禮書의 차이, 禮說에 정해지지 않은 變禮에 대한 고민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³⁵⁾ 이에 대한 퇴계의 답변은 한결같이 통행의 成俗을 배제하지 않는 현실적이고 圓融主義의 경향을³⁶⁾ 드러낸다. 禮制가 국가의 法令과 무관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禮書에 國制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³⁷⁾ 민간의 昌盛한 관습을 참작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학봉

30) 『鶴峯先生文集附錄』 권1, 「年譜」 神宗 萬曆 8年條. 『鶴峯先生文集附錄』 권2, 「行狀」

31) 『鶴峯先生文集附錄』 권3, 「神道碑銘」 “著奉先儀及吉凶慶弔之式 本之朱子之說 參以諸儒之論 令禮俗相稱 情文兩得 授子弟講行之.”

32) 『鶴峯先生文集續集』 권4, 書, 「上退溪先生問目:乙丑」, 「上退溪先生問目」.

33) 이 다섯 통은 1565년부터 퇴계가 易簣한 1570년까지의 5년 사이에 작성된 것이다. 1~2통은 1565년, 3~4통은 1568년, 5통은 1570년에 올렸다. 1565년에 퇴계에게 올린 문목은 2통인데, 서로 이어지는 편지이다. 1통은 총 7개조의 문답으로 모두 제사에 대한 것이고, 2통은 총 4개조의 문답인데 1통의 문답에서 의문나는 점을 제쳐 물은 것이다.

34) 『鶴峯先生文集續集』 권5, 雜著, 「退溪先生言行錄」.

35) 祭禮에 관한 問答 내용은 주 48) 참조.

36) 金彥鍾, 「鶴峯先生의 禮學」 『退溪門下 6哲의 삶과 사상』, 예문서원, 1999, 238쪽 참조.

37) 鄭景柱, 「性齋 許傳의 士儀 禮說에 대하여」 『東洋漢文學研究』 19, 2004, 262쪽.

의 의심에는 尚古的 혹은 원칙주의적 경향도 내재되어 있지만, 대개는 스승의 조화를 모색하는 예론에 복용하여³⁸⁾ 古禮·『家禮』·俗禮·時王之制의 적절한運用을 考究한다.

1) 宗法의 실행과 한계

청계공 김진이 종자·종손을 위해 장남 극일의 규모 있는 家產에도 불구하고 또 祭田을 넉넉히 승중손에게 專給한 것에는, 아직 승중 자손이 정해지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종가의 재정적 바탕이나마 확고히 해두자는 내밀한 心思도 작용한 듯하다.

청계는 禮範의 장자이지만, 예범은 萬謙의 차자이므로, 청계공의 후손은 예범부터 모시는 종가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예범-청계-극일로 이어지는 가계를 계승할 종손이 청계가 [유언]을 남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극일에게는 딸만 둘이 있을 뿐 후사가 없었다. 그래서 [유언]에는 자손이 無後면 繼後를 들이고, 繼後를 들이지 않으면 차자가 승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아직 宗子法에 입각한 立後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던 조선사회의 설정을 대변한다. 無後인 경우에는 立後보다 收養子나 侍養子를 통해 제사를 받들고 있어서³⁹⁾ 성리학의 종법제도에 투철한 繼後는 견고하지 못한 설정이었다. 청계가 立後를 우선하되 차자승계도 인정하는 것

38) 金彥鍾, 「鶴峯先生의 禮學」『退溪門下 6哲의 삶과 사상』, 예문서원, 1999, 238쪽 참조.

39) 정궁식, 「제3장 재산상속과 제사승계의 실태」『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카넷, 2004, 217쪽.

수양자나 시양자를 繼後子로 삼는 경우는 있었다. 及門諸賢 光山金氏 富弼은 동생 富倫의 아이 老眉를 3세 전에 데려와 기르다가 뒤에 繼後하였고(『慶北地方古文書集成』, 543~546쪽, 〔金富弼夫妻 繼後文記: 1567〕), 及門諸賢 安東權氏 好文도 行可를 아이 때 양자로 들였다가 입후하였다(『慶北地方古文書集成』, 556~563쪽, 〔權好文妻柳氏 粘連文記: 1588〕).

은, 지향하는 이념과 보편화된 成俗이 적절히 상관하는 과도기적 시대의 한 단면이다.

청계는 차남 수일의 次子를 극일에게 입후하기를 원했지만,⁴⁰⁾ 실제로 [立後文記]를 보면 수일의 차자 澈이 극일에게 입후된 것은 김진이 사망한 후 1년여 뒤인 1581년이었다.⁴¹⁾ 따라서 1577년 김진 사망 3년 전의 治命은, 철을 봉사손으로 삼기를 바랬지만 계후가 실행될지 차자에게로 종가가 넘어갈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누가 종손이 되던 그에게 제위전을 충분히 남겨 제사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 것이다.

학봉 형제들은 청계공의 유지를 받들어 입후로 宗繼했지만, 차자승중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봉선제규」 「길흉경조제규」 등에 합의된 宗家 중 시 사상은 종자법이 폐지된 이후 혼들리던 봉건 위계 질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었지만,⁴²⁾ 학봉은 여전히 ‘兄亡弟及’을 고금에 통행되는 예법이며 어길 수 없는 時王의 제도라고 여겼다.⁴³⁾

스승 퇴계의 손자 安道가 후사 없이 사망했을 때, 학봉은 동생 詠道로 퇴계의 宗統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입후할 子弟가 마땅히 존재하는데도 입후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안도의 동생 영도에게도 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듯하다. 그래서 학봉은 안도가 別宗이 되어 퇴계의 祠廟에 들어가지 못하는 不忍之事를 감수하더라도 영도가 퇴계를 계승하는 것이 人情과 禮法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40) 『鶴峯先生文集』 권7, 行狀, 「先考成均生員府君行狀」 “맏형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매번 제사를 있는 것을 중하게 여겨 둘째 형의 아들 澈을 후사로 삼게 하였다. 그런 다음 靑杞縣의 別業에 딸린 祭田은 영세토록 나누지 말도록 유명을 내렸다.”

41) 『慶北地方古文書集成』, 548쪽, 「金克一 繼後文記」.

42) 金彥鍾, 「鶴峯先生의 禮學」 『退溪門下 6哲의 삶과 사상』, 예문서원, 1999, 239쪽 참조.

43) 『鶴峯先生文集』 권4, 書, 「答琴聞遠(蘭秀):1585」 “兄亡弟及 此是古今通行之禮. 明道有子 而伊川主宗 明道之子不得爲嫡孫 此不能違時王之制而然也.”

생각하였다.⁴⁴⁾ 이런 경우 다른 族人을 입후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⁴⁵⁾ 학봉은 아직 종법에 대한 이해가 불철저한 탓인지 그대로 차자승계를 주장하였다. 아마도 이는 학봉이 종가를 존중하는 의리를 역설하고는 있었지만, 그도 자신이 속한 당대의 磁氣場에서 완전히 이탈할 수는 없었던 까닭일 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 아직 종법의 확립이 미비했던 까닭은 차자가 종통을 승계하는 것 외에도 祖先奉祀에 있어서 자손들의 윤희봉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사위가 처부모를 향사하거나 외손봉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계공의 3남과 4남은 모두 아들이 없는 집에 外孫奉祀를 하기 위해서 장가를 들었고,⁴⁶⁾ 그래서 학봉은 장인의 제사를 받들고 있었다.⁴⁷⁾ 「퇴계 선생언행록」⁴⁸⁾에서는 長子는 본시 장인의 제사를 받들 수 없지만 맏아들

44) 『鶴峯先生文集』 권4, 書, 「答李明遠(蘭秀):1585」.

45) 이때 다른 문인들도 族人的 계후를 제언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 종손 안도가 父而 神主를 改題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門下의 諸丈들은 '李大孝詠道'로 改題하고서 영도가 次子를 냉아 안도의 뒤를 잇기를 기다려 곧바로 개제하자고 논하였다. 영도에게 次子는 카녕 長子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런 논의는 학봉에게 미온적인 임시방편으로 들렸던 것 같다.

46) 문옥표·김광억, 「제2장 종족조직과 생활문화」,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백산서당, 2004, 46쪽.

47) 학봉은 장인의 제사를 받들었고, 처음 안동군 임동면 원곡에 거주하다가 45세 때 처가 소재지인 서후면 금계리(안동부의 서쪽)으로 이주하여 훗날 남은 장모를 성심껏 모셨다. : 金彥鍾, 「鶴峯先生의 禮學」, 『退溪門下 6哲의 삶과 사상』, 예문서원, 1999, 197쪽 참조.

48) 「退溪先生言行錄」에서는 ①평시의 '以左爲上'과 달리 祭物은 우측부터 진설하는 일, ②『오례의』에 卿大夫로부터 上庶人에 이르기까지 각각 정해진 祭饌器數 외에 더 놓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 ③古禮의 昭穆제도가 황폐한 것을 탄식하던 주자가 「가례』를 지울 때는 도리어 時俗의 예를 쓴 까닭, ④윤달에 제사지내는 문제, ⑤衆子의 처부모 奉祀 여부 등은 절의하였다.

그에 대한 퇴계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①원쪽은 陽에, 오른쪽은 陰에 속하는데, 神道는 陰에 속하기 때문에 오른쪽을 높인다. ②『오례의』대로 다 짜를 필요는 없고 집

이 아닌 衆子라면 사위로서 사당을 지어 장인·장모의 제사를 받들 수 있는지를 여쭙고 있는데, 이는 바로 학봉 자신의 實事에 근거한 發問이었다. 이에 대해 퇴계는 長子가 처부모를 위해 사당을 세우는 것은 근본을 들이 되게 하는 일이므로 잘못이며, 지금 사람들처럼 자기 조상의 사당에 모셔 합祀하는 것은 더욱 심한 잘못이라고 답하였다. 衆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학봉의 질의를 默認한 듯하다.⁴⁹⁾

기제·묘제를 불문하고 자손들이 제사를 돌려가며 지내는 일은 고려조부터 지속되어온 오래되고도 공통된 습속이었다. 조선이 성리학을 國是로 천명한 이후로도 적장자 承重과 상속의 宗法은 사회에 쉽사리 확산되지 않았다. 윤희봉사, 외손봉사는 일상의 일이었고, 자녀의 균분상속 관행이 그를 뒷받침하고 있었다.⁵⁰⁾ 퇴계도 忌日과 俗節 等의 제사는 支子가 지낼 수

안 형편에 따라 제사지내는 것이 무방한데, 지나쳐서는 안 된다. ③『가례』의 祠堂이 時俗의 예를 따른 것은 현행되고 있는 제도를 간단히 고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예는 천하에 두루 행해지는 것인데, 세상이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④윤달은 正月이 아니므로 제사지내는 것은 부당하니, 윤달의 謹日에는 齋戒하고 素食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⑤長子의 처부모 奉祀는 잘못이다.

「上退溪先生問目」에는 ①私忌에 壓尊되어 忌日임을 고하지 못한 일, ②私忌 때 尊客 접대에 素食을 차리는 일, ③忌祭에 손님을 맞이하거나 남의 초대에 나아가는 일, ④古禮와 달리『가례』에 4대 봉사를 규정한 까닭, ⑤時祭 3일·忌祭 1일 재계 등에 대한 질정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퇴계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①까닭을 고하여 어른을 돌려보내되, 고했는데도 어른이 가시지 않는다면 자네처럼 처신해도 된다. ②私忌 때 尊客에게 素食을 대접하는 일은 본디 온당치 않지만, 忌祭에도 厚薄이 있고 貴賓에도 등급이 있으니 그에 따르면 된다. 나는 아내의 忌日에 方伯이 방문했을 때, 기제는 가볍고 손님은 존귀했기에 손님에겐 고기를 내고 나는 채소로 하였다. 이때의 貴賓이란 齒·德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爵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③나 자신도 예법대로 다하지 못하니 감히 說을 지어 답할 수는 없지만, 다만 酒食을 마련해서 遠客을 스스로 부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④고조에게는 服이 있기 때문이다. ⑤7日戒 3日齊는 일개 선비에게는 지극히 효성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이로써 천하 만세에 통행하는 법으로 삼는다면 中道에 지나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나도 매번 부모의 忌日을 당하면 2일 동안 재계하였다.

49) 『鶴峯先生文集續集』 권5, 雜著, 「退溪先生言行錄」.

있다 하였고,⁵¹⁾ 퇴계문하의 從遊人們도 역시 그러하였다.⁵²⁾

조상의 제사를 민가에서는 으레 父祖의 代數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지내므로, 자손이 많을 경우에는 4, 5년에 한 번 제사지내고, 형제 없이 獨子일 경우에는 매년 지내어, 제사지내는 횟수가 드물거나 자주하여 고르지 않으니 몹시 미안한 일이다. 지금 이후로 기제와 묘제는 현재 있는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지낼 것.⁵³⁾

이와 같이 윤희봉사는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던 당대의 풍속이었다. 그래서 학봉은 기제와 묘제의 윤희봉사를 「봉선제규」에 명시하여 공식적인 문종 예법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학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祠堂에서만의 忌日祭를 주장하여 종가 위주의 제례 시행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

자손들이 적당히 제사지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 忌祭를 혹 자기 집에서 지내기도 하니 매우 온당치 못하다. 지금 이후로는 아무리 멀리 사는 자손이라도 반드시 가묘에 나아가 설행하도록 한다. 명령을 어기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종을 매질하는 것으로 벌을 줄 것.⁵⁴⁾

50) 鄭求福, 『古文書와 兩班社會』, 一潮閣, 2002, 151쪽 참조.

51) 許傳, 『上儀』 권15, 如在篇 2, 祭辨疑, '支子不祭, 祭必告于宗子'註 "退溪曰 忌日俗節等祭 支子亦可."

52) 眞城李氏 庭檜의 『松潤日記』를 살펴보면, 1577~1612년까지 安東 周村 宗家の 忌祭도 일종의 분할봉사 형식을 띠고 있었다. : 김문택, 「16~17세기 安東 眞城李氏 家 墓祭 양상과 儒學의 이념」『古文書研究』 26, 2005, 191쪽 참조. 또 『慶北地方 古文書集成』, 197~203쪽, 선조 27년(1594) 정월 19일에 西厓 柳成龍의 모친이 자녀 5남매에게 分財하는 [柳仲鄧母金氏 許與文記]에도 제사 輪行과 친정의 享祀 를 위해 재산을 떼어주는 모습이 등장한다.

53) 『鶴峯先生文集』 권7, 雜著, 「奉先諸規」 6조 "祖先祭祀 人家例以父祖代數輪行 故子孫衆多 則四五年一祭 獨子無兄弟 則每年設行 疏數不均 極爲未安. 今後則忌祭 墓祭 見在子孫等 輪行耳."

54) 『鶴峯先生文集』 권7, 雜著, 「奉先諸規」 5조 "子孫苟簡成習 忌祭或於其家行之 極爲未安. 今後則雖遠居子孫 必就家廟設行. 違令不率者 答奴定罰耳."

이는 유행되던 기제사가 종가의 독점으로 변모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의의가 있다. 의성김씨 집안에서는 18C에도 평균분집과 외손봉사의 遺習이 간헐적으로 남아 있지만,⁵⁵⁾ 顯宗 14년(1673)에 작성된 김방찬의 [遺言]에서는 이를 금지하는⁵⁶⁾ 등, 점차 종가 주재의 奉祀와 상속을 이루어 종손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시켜 나갔다.

2) 時祭와 墓祭의 양상

주자『가례』의 「祭禮」조 편자는 四時祭, 初祖, 先祖, 禩, 忌日, 墓祭로 되어 있다. 즉 時祭, 忌祭, 墓祭의 순서로 기록하여 時祭를 가장 우선시한 것이다. 『가례』에서 말하는 時祭는 사계절의 매 仲月에 家廟에서 지내는 제사이고, 忌祭 역시 4대를 봉사하되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이처럼 『가례』에서는 묘제를 제외하고는 俗節⁵⁷⁾과 正至朔望의 침배⁵⁸⁾까지 모두 사당에서 시행하도록 하여, 사당에서의 제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朝鮮에서는 麗末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도입된 『가례』를 생활의 준거로 삼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예전의 전통대로 4명절에는 주로 묘소에 가고, 조상의 기일에는 형편에 따라 집안이나 묘소, 사찰 등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조선조 사대부가에서는 16~17C 초까지 묘제가 사당에서의

55) 문옥표, 「분재기를 통해 본 여성 재산상속권의 변화」,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백산서당, 2004, 263~264쪽 참조.

56) 顯宗 14년(1673) 7월 26일에 작성된 김방찬의 [遺言]은 財主 儒學 방찬이 자식들에게 分財하는 고문서인데, 딸에게는 婢만 일부 분급할 뿐, 다른 재산은 일체 분급하지 않았다. 약간 있는 집안의 田民을 여식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면 아들들이 장차 떠돌아다니는 삶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아들들에게만 노비와 전답을 모조리 나누어주게 하고, 제사는 외손에게 輪行시키지 말라고 유언하였다. : 『古文書集成 6』, 145쪽, [分財記 22].

57) 『家禮』「通禮」祠堂 '俗節則獻以時食' '節如清明寒食重午中元重陽之類 凡鄉俗所尚者, 食如角黍 凡其節之所尚者 薦以大盤 間以蔬果, 禮如正至朔日之儀.'

58) 『家禮』「通禮」祠堂 '正至朔望 則參'.

제사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⁵⁹⁾

퇴계 이황은 일찍이 사대부가의 이러한 ‘忽廟崇野’의 경향성을 지적하면서, 體魄을 중히 여기고 神魂을 가벼이 여기는 현실을 경계하였다.⁶⁰⁾ 또 『가례』의 예법대로 시제는 극도로 신을 섬기는 도리이기 때문에 제례 3일을 해야 하나, 묘제나 기제는 후세의 세속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면 된다고 하였다.⁶¹⁾ 퇴계는 원칙적으로 『가례』에 의거하여 묘제나 기제보다는 시제를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관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으므로 양자를 절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⁶²⁾ 퇴계는 俗節에 묘제를 지내는 것이 예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역시 풍습을 따라 성묘했으며 가묘에서는 제사를 올리지 않았다.⁶³⁾ 궁극적으로 제사에 대한 퇴계의 입장은 예전부터 있어온 우리의 묘제 등을 소홀히 다루지 않으면서도 古禮나 『家禮』 등 儒家的 예법을 충실히 지키자는 것이었다.

가묘의 시제를 중시하는 퇴계의 입장은 학봉에게도 전수되었다. 학봉은 총 9조목의 「奉先諸規」를 제정하면서 “祭儀는 한결같이 주자의 『가례』를 따라서 한다”는 말과 함께 제일 먼저 時祭에 대한 규정을 거론하였다.⁶⁴⁾ 또 종가가 빈한한 탓에 시제를 폐지하고 있는 실태를 안타깝게 여겨, 門中에서 가묘의 시제를 폐지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完議하여 그 비용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였다.

59) 김문택, 「16~17세기 安東 貞城李氏家 墓祭 양상과 儒學의 이념」『古文書研究』 26, 2005, 175쪽.

60) 『退溪先生文集』 권42, 記, 「樹谷記」, 권37, 書, 「答權章仲喪禮問目」.

61) 『退溪先生文集』 권27, 書, 「答鄭子中別紙:庚午」.

62) 김문택, 「16~17세기 安東 貞城李氏家 墓祭 양상과 儒學의 이념」『古文書研究』 26, 2005, 194·195·175쪽 참조.

63) 『鶴峯先生文集續集』 권5, 雜著, 「退溪先生言行錄」.

64) 『鶴峯先生文集』 권7, 雜著, 「奉先諸規」“凡祭儀…從文公家禮 時祭 則每年二分二至定行.”

만력 9년 신사 4월 29일 문중 완의문

이 글은 宗家가 매우 곤궁하여 家廟의 四仲月 朔의 제사를 오로지 폐하고 지내지 않으니, 자손들의 追遠의 정성이 쓸어버린 듯하여 극히 한심스럽다. 知禮 谷賛 새로 일군 8마지기는 先世에 비롯되어 東林의 墓田으로 그대로 소속 시켰거니와, 다시 모두 의논하되, 齋寺 三寶位는 官屯田이 여전히 많으니 비록 이 논이 아니라도 갈아먹을 수 있으며, 4名日 제사도 자손들이 輪行하니 비록 이 논이 아니라도 폐지되지 않을 일이기에, 우선 가묘의 四仲朔 제사를 폐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종가에 귀속시켜 祭需 마련에 이바지하게 하되, 墓祭·家廟 祭器 등의 물건은 갖추어 나올 곳이 없으니 또한 염려할 만하다. 同番의 소출을 3년에 한 번씩 반을 나누어 바꾸어 오면, 彼此의 情義가 또한 양쪽 모두 온전하게 될 것이므로, 門中의 논의가 모두 같아 종가에 移屬시킨다. 한편으로는 祭享을 위하고 한편으로는 □□를 위하여 영원히 폐하지 말 것이로되, 曾祖의 神主가 대수를 다하여 사당을 나가게 되거든, 위의 논을 그 墓位에 환속시키고 자손 중에 有司를 돌아가면서 정하여 제사한다는 예문대로 1년에 1번 제사를 지내되, 백세토록 바꾸지 않도록 할 일. … 위 글을 셋으로 만들어 종가 및 부장·부사댁에 나누어 보관하여 후일의 상고에 대비할 것. 위의 논은 '流'字 3等 15ト이다.

전부장 김박(수결) 전참봉 김수, 유학 김원일(수결) 전밀양부사 김극일(수결), 전직장 김종일(수결) 생원 김수일(수결), 유학 김정일(수결) 유학 김득일(수결), 좌랑 김복일(수결) 유학 김덕일(수결), 유학 김협일(수결) 유학 김지일(수결), 펠 사인 김성일(수결)⁶⁵⁾

65) 『古文書集成 6』, 99~100쪽, [完議 17] : 『慶北地方古文書集成』 794~795쪽 탈초 참조.

萬曆九年辛巳 四月二十九日 門中完議文

右文者 宗家窮甚 家廟四仲朔祭事 專廢不行 子孫追遠之誠 掃如極爲寒心爲置 知禮谷番加耕八斗落只庫乙 先世始叱 果林墓田以 依屬爲有在果 更良僉議爲乎矣 齋寺三寶位叱段 官屯田尙多 雖非此番 猶可耕食爲於 四明日祭叱段置 子孫輪行 雖非此番 猶得不廢爲乎事是去乎 先可家廟四仲朔祭不廢條以 許屬宗家 以資粢盛之供爲乎矣 墓祭家廟祭器等物 辦出無路 亦爲可慮 同番所出乙 三年一次式 分半貿易 彼此情義 尤爲兩合爲平等乙用良 門議僉同 移屬宗家 一以爲祭享 一以爲□四 永永無廢爲乎矣 曾祖神主代盡出廟爲去乙等 右番乙 還屬墓位 子孫中有司輪定 禮文貌如 歲一祭之 百世不改爲乎事 … 右文三度成置 分藏宗家及部將府使宅以備後考次 右番流字三等十五ト 印

위의 문서는 청계공이 사망한 이듬해인 선조 14년(1581) 4월 29일, 학봉을 위시한 천전파 집안에서 시제의 제전 마련을 논의한 [完議文]이다. 청계공은 윤4월 23일에 逝世했으니,⁶⁶⁾ 문중 완의가 있던 이 시점은 청계공의 小祥 언저리였다.⁶⁷⁾ 아마도 이 완의는 청계공의 練祭를 지내기 위해 형제들이 다들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학봉의 연보를 보면 「喪禮考證」도 청계공의 여묘살이 때 저술되는데, “居喪함에 있어 葬事 전에는 喪禮를 읽고, 葬事 후에는 祭禮를 읽는다”⁶⁸⁾는 말에 입각하여 학봉은 부친의 3년상을 치르는 도중에 상·제례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완의문]에서 말하는 宗家는 인범의 宗孫이다.⁶⁹⁾ 논의에 참여한 인물로는 수결한 인범의 손자 원일, 인범의 3남의 아들 정일, 인범의 4자

前部將 金珀(手決), 前參奉 金璣, 幼學 金元一(手決), 前密陽府使 金克一(手決), 前直長 金宗一(手決), 生員 金守一(手決), 幼學 金精一(手決), 幼學 金得一(手決), 佐郎 金復一(手決), 幼學 金德一(手決), 幼學 金協一(手決), 幼學 金至一(手決), 笔舍人 金誠一(手決)

66) 『鶴峯先生文集』권7, 行狀, 「先考成均生員府君行狀」

67) 청계공의 小祥은 '閏달은 바쁜 달이 아니라'는 退溪의 말에 따라 시행했다고 하니, 아마도 1581년 4월 23일에 지냈을 것이다.

68) 『鶴峯逸稿』권4, 「喪禮考證」居喪雜義 “居喪 未葬讀喪禮 既葬讀祭禮. ……曲禮下”

69) 『義城金氏大同譜』, 回想社, 1992.

漢啓 - 萬謹 - 仁範 - 嘵 - 主 -

	- 璞 - 元一
	- 璞 - 精一
	- 珀 - 宗一, 得一, 德一
	- 璞 - 春一
- 禮範 -	- 璞 - 克一, 守一, 明一, 誠一, 復一, 衍一
	- 斑 - 弘一
	- 璞 - 協一, 至一, 道一
- 智範 -	- 珪
	- 均 - 德千, 德京
	- 機 - 德允

박과 박의 세 아들, 예범의 장자 진의 네 아들, 예범의 3남 수와 수의 두 아들이다. 한계—만근—인범—환—주일로 宗統이 내려오는데, 주일은 이때 사망했는지 불참하였다. 주일은 獨子이고, 그 자신도 딸만 둘이어서 이후 絶孫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집안의 종손은 인범의 차자 리의 외동아들 元一이 된다.

예범은 3남을 두었는데, 장자 琨과 차자 斑은 이미 사망했기에, 3자 수만 참여하고 있다. 그 대신 청계의 五賢子는 1570년卒한 3남 명일 외에 모두 참석하고 있고, 1578년에 출한 斑의 집에서는 嫡子 없이 庶子 弘一뿐이라 참석자가 없다.⁷⁰⁾

이 문서는 세 통을 만들어 종가·부장·부사댁에 나눈다 했으니, 宗家와 인범의 4자 박의 집안과 예범의 장자 청계공 집안에만 보관하고, 예범의 3자 수의 집안에는 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3자 수는 본인과 두 아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관직면에서나 경제면에서⁷¹⁾ 논의를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반면 이미 명망이 높은 청계공의 아들들은 모두 참여하고 있고 또 성일이 筆執이 되어 결정사항을 쓴 것으로 보아, 청계파가 문중의 중심 위치로 성큼 다가서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학봉은 수 년 뒤에 「奉先諸規」「吉凶慶弔諸規」를 지어 문중의 정식으로 삼았는데, 이때는 학봉 위로 세兄들이 모두 사망하고 없었기 때문에⁷²⁾ 여러모로 50세의 학봉이 청계파의 尊長格에 올랐을 것 같다.

70) 『古文書集成 6』, 129쪽 [分財記 4]는 1578년 7월 초4일 財主 前 中部參奉 金斑이 永嘉權氏와 혼인하여 50여 세가 되도록 子息이 없다가 뒤늦게 庶子 弘一을 보았기에, 홍일과 養女 및 조카들에게 재산을 허여하는 自筆 문서이다.

71) 『鶴峯先生文集』 권7, 行狀, 「先考成均生員府君行狀」: 작은 아버지가 자식이 많아 제 때에 시집 장가를 들이지 못하자 재산을 내어 혼수를 마련해 세 딸을 시집보내 주었다.

72) 극일은 선조 18년(1585) 1월에, 수일은 선조 16년(1583) 6월에, 명일은 부친 청계 공보다 먼저 卒했다.

학봉이 시제를 중시한 것은 일차적으로 『가례』에 근거한 일이다. 하지만 小節에 들어가서는 현행의 제사 실행 실태를 감안해 나름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 『가례』의 시제는 四仲月인 2·5·8·11월에 지내되, 날짜는 擇日한다.⁷³⁾ 그러나 학봉은 주자와 달리 매년 春分·秋分·夏至·冬至에 시제를 실행하는 것으로 날짜를 못박았다.⁷⁴⁾

주자의 『가례』는 司馬光의 『書儀』를 많이 채택했는데, 『서의』에는 “당나라 사람 孟詵이 二分二至를 사용했는데, 날짜를 점칠 겨를이 없으면 分至를 사용해도 좋겠다”⁷⁵⁾고 하였다. 하지만 학봉이 二分二至說를 채택한 것은 이른바 편리함보다는 그 시기가 고른 것을 귀중하게 여겨서일 터이다.⁷⁶⁾

당시에는 시제보다 묘제를 많이 지냈고,⁷⁷⁾ 正朝·寒食·端午·秋夕의 4명일 외에도 정월 대보름, 삼월 삼진날, 유월 유두, 칠월 칠석, 중양절 등에 節日祭를 지냈다.⁷⁸⁾ 그러다보니 4번의 시제 횟수를 줄이거나 節日祭와 겹행하는 경우가 많았다.⁷⁹⁾ 학봉은 이렇게 시제가 생략되는 풍속을 지양하

73) 『家禮』「祭禮」四時祭 '時祭用仲月 前旬卜日'을 보면, 孟春의 下旬 초에 仲月의 三旬 중 각각 하루(丁日 혹은 戌日)를 택하여, 먼저 상순의 날짜가 길한지를 점친다. 상순의 날짜가 길하지 않으면 다시 중순의 날짜를 점치고, 중순의 날짜가 길하지 않으면 다시 점치지 않고 바로 하순의 날짜를 쓴다.

74) 『鶴峯先生文集』 권7, 雜著, 「奉先諸規」 1조.

75) 『家禮』「祭禮」四時祭 '時祭用仲月 前旬卜日' 註 “司馬溫公曰 孟詵家祭儀 用二至二分, 然今仕宦者 職業既繁 但時至事暇可以祭 則卜筮 亦不必亥日及分至也. 若不暇卜日 則止依孟儀用分至 於事亦便也.”

76) 許傳, 『上儀』 권15, 如在篇 2, 四時祭, '時祭 用仲月, 前旬卜日' 註 “張子曰 祭用分至 貴其時之均.”

77) 김문태, 「16~17세기 安東 貞城李氏家 番祭 양상과 儒學의 아념」 『古文書研究』 26, 2005, 193쪽. : 시제는 묘제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시행되지도 않았다.

78)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종가의 제례와 음식 -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 종가』, 김영사, 2003, 20쪽 참조.

79) 조선중기 默齋 李文撤(1494~1567)의 『목재일기』를 보면, 時祭를 실제로 네 번 행한 적은 거의 없으며 節日祭와 겹행하거나 생략된 경우가 많았다. : 김경숙, 「16세기

고자 날짜를 명확히 하여 유동성에서 오는 축소를 방지한 것이다.

학봉은 또 『가례』에 근본하면서도 『가례』와 상반되는 당시의 祭享 습속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 묘제는 『가례』의 「제례」조 제일 끝에 언급되어 비중이 가장 낮다. 그렇지만 당시 사대부가에서는 자주 묘제를 올렸다. 학봉 집안도 [완의문]의 “네 명절 제사도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행하니”에서 보듯, 윤회봉사의 4명절 묘제를 설행하고 있었다.⁸⁰⁾ 학봉의 「奉先諸規」의 여덟 번째 조목도 바로 4대의 묘제에 관한 것이다.

4대의 묘제는 날짜를 정하지 않아 혹 같은 날 지내기도 하므로, 자손들이 비록 묘소 아래에 이르고서도 직접 설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몹시 온당치 못하다. 지금 이후로는 각각 俗節 3일 전부터 차례대로 지내되, 有故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날짜를 당기거나 물리지 말 것.⁸¹⁾

묘제가 시제보다 선행되는 풍속은 너무나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봉은 이런 시속을 그대로 수렴하여 후손에게 講行하는 祭禮定式에 포함시킴으로써 一門의 예법으로 성문화한 것이다.

한편, 鶴峯家는 『가례』의 묘제에 대해서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가례』에서 말하는 묘제는 代數가 다해 사당에서 出主 埋安된 조상을 위한 제사이다.⁸²⁾ 『가례』의 제사는 가묘에 봉안된 神主에게 시제와 기제를, 埋安된

사대부 집안의 제사설행과 그 성격 - 李文健의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韓國學報』 98, 2000, 25쪽.

80) 上墓하지 못할 때는 사당에서 모셨다. 학봉의 「기묘일기(1579)」 3월 1일자를 보면, 寒食祭를 지내는데 물에 막혀서 모친 산소에 올라가지 못하고 사당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東林의 曾祖 墓祭도 그렇게 하였다. : 『鶴峯逸稿』 권3, 「己卯日記」 “三十日丙午雨。下川前明將行寒食祭故也。三月初一日丁未晴。阻水未得上母塋祭于祠堂東林祭亦然。”

81) 『鶴峯先生文集』 권7, 雜著, 「奉先諸規」 8조 “四代墓祭 不爲定日 或同日設行 故子孫等 雖到墓下 不得親行 極爲未安。今後則各其俗節前期三日 相次設行 除有故外 毋得進退事。”

遠祖에게 묘제를 享祀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대별되는 셈이다. 앞서 살펴본 문중의 [완의문]에는 이런 『가례』의 墓祭 개념이 혼합되어 있다.

1581년 당시 천전파는 아직 3대 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대 학봉行列에 와서는 증조부 만근이 다음대에 곧 桃遷될 운명이었다. 이에 문중에서는 만근이 代盡되어 사당에서 나가면, 『가례』의 묘제처럼 해당 祭位田을 해당 墓田으로 돌리고, 『가례』의 묘제처럼 1년에 1번씩 제사지내고자 결의하여 백세토록 불변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때의 完議는 묘제 실행에 대해 3월 상순 중 하루를 택일하는 『가례』⁸³⁾와는 달리 시기를 전혀 설정하지 않았지만, 祭田을 墓田으로 돌려 代盡된 조상의 묘소에 '1년에 1번' 제향한다는 점에서 『가례』식 묘제의 진정한 의미가 획득되었기에 흥미롭다. 더구나 만근은 川前 入鄉祖로서의 중요성이 있으니, 永永不變할 묘제의 定規는 의성김씨 천전파에게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家廟 안의 조상에 대한 묘제 외에 代盡된 遠祖의 묘제를 더 규정하는 일은 그 시기 일련의 조상찾기 분위기와 맛물리는 것 같다.⁸⁴⁾ 청계는 선조 9년(1576) 천전파의 중시조인 肅寧公 龍庇(1214~1259)의 무덤을 발견해 비석을 세우고 사당을 마련하는 등 爲先사업을 앞장서 주도하였다.⁸⁵⁾ 12

82) 『家禮』「通禮」祠堂「置祭田」計見田每龕收其二十之一以爲祭田，親廟則以爲墓田。"

83) 『家禮』「祭禮」墓祭「三月上旬擇口前一日齋戒」。

84) 眞城李氏家도 16C에 들어와 先代의 墓所 관리에 관심을 표명하였다. 퇴계 당대에 진성이씨는 별도의 족보를 갖지 못했으며, 퇴계 역시 선대의 계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차후로 계보를 파악해 나가면서 조상의 묘소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당시 眞城李氏家에서는 이황의 조부모나 증조부모(4세 李祿)네까지만 묘소를 관리하고 있어서, 퇴계는 宗孫인 李演에게 고조부인 3세 李云旼의 묘소를 찾자고 제의하였다. 이때부터 失傳된 묘소를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이황이나 宗孫인 李庭楨는 일단 世傳되는 묘소를 대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묘소마다 비석을 설치하였다. : 김문택, 「16~17세기 安東 眞城李氏家 墓祭 양상과 儒學的 이념」『古文書研究』 26, 2005, 177~178쪽 참조.

85) 문옥표·김광익, 「제2장 종족조직과 생활문화」『조선양반의 생활세계』, 백산서당, 2004, 57~58쪽, 90~93쪽 참조.

대 台權은 京畿 竹山府에 묻혀 외손인 신씨들의 봉사를 받아왔는데, 학봉이 주동해 산소를 다시 만들고 묘비를 세워 묘소 관리와 제사를 관장하였다.⁸⁶⁾ 학봉은 또 선조 8년(1575) 「先祖考秉節校尉府君墓碣銘」과 「先祖妣宜人寧海申氏墓碣銘」을 짓기도 하는 등 선대 추승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親盡된 조상에게 올리는 『가례』의 묘제는 기본적으로 遠祖의 묘소가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므로, 당시에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及門의 奉化琴氏 應夾·應壎도 이 시점에 와서야 『가례』식의 묘제를 정례화하는 것 같다. 선조 24년(1591)에 작성된 이 집안의 [祭田成文]을 보면, 사당의 代盡이 다한 후에 祭田을 墓田으로 돌리는 것이 『가례』의 법식이므로 先賢의 墓祭 예법을 백세토록 교훈 삼아 追遠의 情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면서, 祭用을 정하고 내외자손이 번갈아 담당할 것을 문서화하였다.⁸⁷⁾ 바야흐로 조선사회는 先祖의 연원을 탐색하고 발굴하여 設享함으로써 공동체적 연대의식과 종족 동질성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

4명절의 墓祭와 함께 代盡된 묘소에 영구히 향사하도록 한 앞의 [완의문]은 민간의 墓祀를 포용하면서 동시에 『가례』의 묘제 규정을 적용시킨 융통성이 눈에 띈다. 조선후기 성리학 사회가 고착화될수록 묘제 실행 횟수는 줄어들면서 『가례』『제례』의 墓祭 모습에 근접해가는데, [완의문]의 묘제 실행 양상은 그 변화의 출발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86) 『鶴峯先生文集附錄』 권1, 「年譜」 神宗 萬曆 7年條.

87) 『慶北地方古文書集成』, 796쪽, [琴應夾 등 祭田成文] “萬曆十九年辛卯 十一月二十四日 成文爲臥乎事叱段 詣觀家禮置祭田條 祠堂祭田親盡之後 以爲墓田 … 先賢制禮墓祭 則雖百世遵之而不廢 垂訓萬歲 後之人子 安敢不爲之感發而矜式乎 今者思先賢之訓 懷追遠之情 爲墓祭與守護 …”

4. 禮宜從厚의 경향

「上退溪先生問目」과 「退溪先生言行錄」에서 보듯 학봉의 禮說은 퇴계 와의 問答을 통해 성숙되어 갔다. 그러나 학봉은 퇴계에게 訓導 받았지만 스승이 非禮로 단정한 禮式을 강행하기도 하였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주자도 반대하고 퇴계도 반대했던 여묘살이를 이행한 점이다.⁸⁸⁾

廬墓는 漢나라 때부터 시행된 것으로 古禮가 아니며, 神主보다 體魄을 중시한다는 비판이나 返魂禮를 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非禮라고 이야기 된다.⁸⁹⁾ 그러나 侍墓는 아버지 청계공도 준행한 일로,⁹⁰⁾ 학봉의 資稟으로는 人情에 順하는 厚德한 일이 되어 쉽게 폐기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초상을 치름에 있어서는 슬픔을 다하였고, 제사를 받들에 있어서는 정성을 다하였다. 일찍이 말하기를 “상례는 人道의 大節이요, 자식이 반드시 誠慎히 해야 할 자리이다. 우리나라에는 廬隱 · 治隱 두 선생이 여묘하면서 喪을 마친 아래 사람들이 모두 보고 감동하여, 文敬公[金宏弼] · 文獻公[鄭汝昌]을 비롯한 여러 선생들도 모두 이를 행하였다. 비록 古禮는 아니지만, 孝子가 차마 體魄이 묻힌 곳을 갑자기 떠날 수는 없으니, 실로 지극한 情理에서 비롯된 것이다. …” 하였다.⁹¹⁾

여기에는 주자와 스승이 비록 非禮라고 규정한 여묘살이지만, 부모를 그

88) 모친은 병종 원년(1546) 학봉이 9살 때 돌아가셔서 侍墓하지 못한 듯하고, 선조 13년(1580) 별세한 부친상에는 7월 29일 犯事 이후 내내 侍墓하였다. :『鶴峯先生文集附錄』 권1, 「年譜」神宗 萬曆 8年條 참조.

89) 許傳, 『上儀』 권12, 易城篇 7, '廬墓' 註 “顧炎武曰 廬墓者 自漢有之 然不知其神主置於何地 其奉之墓次乎 是野祭也 其空置之祠堂乎 是視其體魄返過於神也 且孝如曾子未嘗廬墓.”

90) 『鶴峯先生文集』 권7, 行狀, 「先考成均生員府君行狀」

91) 『鶴峯先生文集附錄』 권2, 「行狀」居喪致其哀 奉祭盡其誠 啓曰 喪禮 人道之大節 人子必誠必信之地 我東自廬隱治隱兩先生 廬墓終喪 人皆觀感 文敬文獻諸先生亦皆行之 雖非古禮 而孝子不忍遽離體魄之所藏 實出於至情. …”

리는 효자의 지극한 심정에 부합되므로, 우리 옛 名賢들도 시행했으니 이상 할 것 없다는 옹호의 심사가 묻어난다. 侍墓가 비록 古禮에 없는 굴절된 親親이라 해도, 차마 부모의 시신 곁을 서둘러 떠날 수 없는 人情의 발로 임을 감안한다면 준행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논리였다. 情과 禮 사이의 모순에서 학봉은 人情에 따라 從厚할 것을 택하였던 것이다. 학봉의 뇌리에는 人情에 順하는 것이 예의 大體라는 명제⁹²⁾와, 그리하여 禮宜從厚에 협응해야 한다는 명제가 줄곧 각인되어 있었던 듯하다.

학봉 예학의 從厚의 경향은 齋戒를 삼가 행할 것을 강조하는 데서도 볼 수 있다. 학봉은 古禮의 7日戒 3日齊를 『가례』가 왜 時祭 3일재·忌祭 1일재로 축소했는지 의문스러워했고,⁹³⁾ 그 3일재도 제대로 준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무랐다. 그리하여 재계에 신실할 것과 상세한 재계 방법까지 「봉선제규」에 수록하였다.⁹⁴⁾

『국조오례의』에는 신분에 따라 祭饌器數가 정해져 있는데, 학봉은 퇴계에게 더 놓으면 안 되는가를 여쭈어 보았다.⁹⁵⁾ 稱家하여 제사지낸다는 원칙 아래, 학봉은 신분과 재물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의 성의를 표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 역시 從厚를 희망하는 학봉 예학의 편린이다.

예는 후한 예를 따른다(禮宜從厚)는 원칙이 무엇보다 긴절히 작용된 곳은 봉사의 代數를 올리는 문제에서였다. 앞서 보았듯이, 청계공이 졸한 당시까지 학봉 집안에서는 3대 봉사를 하고 있었다. 천전파는 학봉의 5대조인 永命(15대, 次子)을 別子로 해서 영명-한계-만근-인범-청계항렬-학봉항렬

92) 『鶴峯逸稿』 권4, 「喪禮考證」“凡禮之大體 體天地 法四時 則陰陽 順人情 故謂之禮 :喪服四制”

93) 『鶴峯先生文集續集』 권4, 書, 「上退溪先生問目:乙丑」.

94) 『鶴峯先生文集』 권7, 雜著, 「奉先諸規」 4조.

95) 『鶴峯先生文集續集』 권5, 雜著, 「退溪先生言行錄」 “問 祭禮考五禮儀 則祭饌器數 自卿大夫至士庶人 各有其品 品數之外 斷不可越否.”

로 내려오는 小宗을 이룬다. 청계 사후에도 3대 봉사를 하고 있었으니, 학봉 말년의 봉사 代數 문제는 현실적으로 중조부 만근에게 집중되어 있다.

3대 봉사는 古禮이면서, 『경국대전』에 수록된 조선의 國制⁹⁶⁾ 時王의 제도였다. 학봉은 이것이 4대 봉사를 규정하고 있는 『가례』와 달라, 다음과 같이 스승에게 질정하였다.

문: 高祖의 제사는 古禮를 기준으로 하면 士大夫 신분으로는 제사지낼 수 없는데, 주자가 『가례』에 드러낸 것은 어째서입니까?

답: 고조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古禮로써 단정한다면 사대부는 감히 제사지낼 수 없는 듯하네. 그러나 高祖에게는 服이 있고, 『예기』에도 祀祀는 고조까지 할 수 있다는 글이 있지. 그러므로 程子는 제사지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朱子가 『가례』에 드러낸 것이라네. 지금 예를 좋아하고 옛것을 사모하는 선비가 이에 의거하여 행하는 것이 어찌 참람한 일이겠는가? 다만 時王의 제도에 3대까지 제사지낸다는 法典이 있고, 夫子께서도 周나라를 따르셨다네. 그러니 아마도 『가례』에만 의거하여 사람마다 이 예를 행하도록 다 쳐려하기는 또 어려울 듯하네.⁹⁷⁾

즉 퇴계는 程子가 高祖에게 服이 있다는 이유로 4대 봉사를 했기 때문에 朱子도 그에 따라 『가례』에 나타낸 것이니, 요즘 사람들의 3대 봉사가 時王之制이기는 하나, 힘이 미칠 수 있다면 4대 봉사를 통행해도 좋다고 하였다. 이에 힘입어 학봉은 父兄 死後 스스로 家法을 哺導할 수 있는 시점에서 마침내 4대 봉사로 家法을 바꾸었다.

96) 『經國大典』禮典 ‘奉祀’文武官六品以上祭三代，七品以下祭二代，庶人則只祭考妣。”

97) 『鶴峯先生文集續集』 권4, 卷4, 「上退溪先生問曰:乙丑 “高祖之祭 準以古禮 則士大夫分不當祭 而朱子答爲家禮 何也。 / 答 祭高祖 斷以古禮 則士大夫似不敢祭。然高祖既有服 禮記又有子祫及高祖之文 故程子以爲不可不祭 朱子因著爲家禮。今好禮慕古之士 依此行之 豈爲僭乎。但時王之制 祭三代有典 夫子亦從周 則又恐難於據家禮 盡責人人以行此禮耳。”

고조는 복이 있는 至親이다. 그러므로 비록 禮典에 3대를 제사지내고 2대를 제사지낸다는 글이 있지만, 先儒가 고조에 대해 제사지내는 것을 허락하여 『가례』에 드러내었다. 그런데도 자손들이 조상을 추모하는 정성이 없어서 국법을 평계대고는 禮文을 준행하지 않으니, 후한 쪽으로 따르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 문중은 祖先 아래로 제사 받들기에 오직 삼갔으니, 자손들은 각자 의당 온 정성을 다하고, 대대로 지켜서 바꾸지 말 것.⁹⁸⁾

학봉은 경대부가 3대를 제사지내고 서인이 考妣를 제사지내는 우리의 國俗이 한결같이 禮文을 준수하여 분수를 뛰어넘지 않는 일이지만,⁹⁹⁾ 사대부가 조상을 4대까지 제사지내는 것도 무방한 일이기 때문에, 고조 역시 五服之親이라는 대전제에 입각하여 3대 봉사 원칙을 4대 봉사 원칙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는 학봉의 行祭禮 절목에서 아마도 가장 큰 변화일 터인데,¹⁰⁰⁾ 고조도 服親임을 내세우는 이면에는 후한 쪽으로 行禮하고자 하는 학봉의 예 의식이 내재되어 있었다.

아울러 4대 봉사는 16세기 중반 이황의 문인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도 되기 시작했고,¹⁰¹⁾ 그 중에서도 학봉 김성일이 가장 먼저 전면적으로 인정했다¹⁰²⁾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는 김성일의 問禮와 이황의 下答이 학봉 자신의 行禮의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師弟간의 問答 및 학봉의 行禮가 안동과 영남지역의 禮學 발달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¹⁰³⁾

98) 『鶴峯先生文集』권7, 雜著, 「奉先諸規」9조 “高祖 係是有服之親. 故禮典 雖有祭三代二代之文 先儒許令祭及高祖 著諸家禮. 而子孫無追遠之誠 委以國法 不遵禮文 從厚之意安在. 吾門自祖先以來 致祭惟謹 子孫各宜盡誠 世守勿替事.”

99) 『鶴峯先生文集』권6, 雜著, 「朝鮮國沿革考異」.

100) 학봉 당대에는 아직 不遷位나 別廟 문제는 제기되지 못했다.

101) 조선후기 4대 봉사가 보편화된 것도 金誠一, 金富弼, 柳雲龍 등 퇴계 문인들의 실천적인 노력을 통한 결과일 것이다. :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0, 71쪽 참조.

102) 鄭肯植, 「朝鮮前期 四代奉祀의 形成過程에 대한 一考察」『법제연구』11, 1996, 149쪽.

일종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또 학봉의 예설은 門中은 물론이겠거니와,¹⁰⁴⁾ 退溪-鶴峯-大山-東巖으로 이어지는 학봉학맥의 예학에도 선구적인 역할을 했을 법하다.¹⁰⁵⁾

5. 맷음말

성리학 이념은 禮治를 강조한다. 그러나 禮法은 동서고금이 같지 않다. 古禮와 今禮, 禮書와 通俗이 다르고, 常禮 이외의 變禮 또한 다양하다. 그러므로 예학가들은 시대적 재해석과 응용을 통해 가장 적실한 예제의 실천 방안을 재구하고자 한다.

鄒魯之鄉의 안동에서 퇴계의 衣鉢을 전수한 及門高弟 학봉도 制度와 成俗이 禮書에 맞지 않는 여러 조목들을 고민했고, 스승에게 질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禮論을 조율해 나갔다. 특히 부친 靑溪公의 뜻을 받들어 祖先을 향사하는 일과 宗家를 保衛하는 일에 깊은 관심과 실천을 보였다.

祭禮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朱子의 『家禮』를 근본으로 삼아, 時祭를 중시하고, 忌祭祀의 家廟 실행을 주장했으며, 代盡한 조상의 墓祭를 1년

103) 권오영, 「학봉 김성일과 안동 지역의 퇴계학맥」,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경북대 학교 퇴계연구소, 보고사, 2004, 69쪽 참조.

104) 학봉이 규정하고 시행한 상례절차는 子弟와 『再生』들이 모두 강습하여 행하였고, 부녀자들도 다 禮文을 잘 알았다고 한다. : 「鶴峯先生文集附錄」 권2, 「行狀」참조.

105) 학봉학맥에서 예학 방면으로 질정을 이룬 사람은 「常變通攷」를 저술한 全州柳氏 東巖 柳長源이다. 안동 무실[水谷]의 전주유씨 집안은 임향 시조 柳城이 학봉의 부친 金璉의 사위가 됨으로써, 학봉 집안과 수백 년 동안 중첩되는 혼인관계로 결속되어 왔다. 따라서 학봉의 제자교육 구심점에는 무실의 전주유씨가 있었고, 그 혈연과 학연의 맥락 속에서 유장원이 등장하였다. 劉權鍾, 「동양한문학회 제82차 학술 발표회자료집」, 2004.2.18, 4~5쪽을 참고하면, 동암의 예학은 「가례」를 중심으로 삼는 성리학적 예학의 계승, 「가례」를 중심으로 삼더라도 「가례」 자체가 마비하다는 점을 중시하여 그것의 보완을 추구하는 예학적 태도, 퇴계-학봉-대산 등으로 이어지는 치밀한 고증을 통한 실증적 연구 기풍이 돋보인다.

에 1번 준행하고자 하였다. 또 禮宜從厚의 뜻으로 3대 봉사에서 4대 봉사로 전환하여 門中의 定式으로 삼고, 享祀의 3일 재계를 철저히 준수하였다.

그렇지만 時俗은 무시하고 禮書만을 추종하는 경직성은 보이지 않는다. 학봉은 한편으로 禮經·禮書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한편으로 俗禮와 時王의 제도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양자의 조화를 모색하였고, 그 속에서 언제나 敦厚한 人情으로 行禮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자료

- 『禮記』, 『家禮』
金誠一, 『鶴峯全集』
李滉, 『退溪先生文集』
許傳, 『上儀』
『義城金氏大同譜』, 同想社, 199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古文書集成 5~7-義城金氏川上各派篇(I~III)』, 1989
~1990.

李樹健, 『慶北地方古文書集成』, 嶺南大學校出版部, 1981.

저서 및 논문

-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이수건 외,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카넷, 2004.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退溪門下 6折의 삶과 사상』, 예문서원, 1999.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보고사, 2004.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2, 역사비평사, 2000.
鄭求福, 『古文書와 兩班社會』, 一潮閣, 2002.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종가의 제례와 음식 -의성김씨 학봉 김성일 종가』, 김영사,
2003.
문옥표 · 박병호 · 김광억 · 은기수 · 이충구,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義城金氏 川前
派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백산서당, 2004.
鄭肯植, 『朝鮮前期 四代奉祀의 形成過程에 대한 一考察』, 『볍제연구』 11, 1996.
김경숙, 『16세기 사대부 집안의 제사실행과 그 성격 -李文樞의 『默齋日記』를 중심
으로』, 『韓國學報』 98, 2000.
鄭景柱, 「性齋 許傳의 上儀 禮說에 대하여」, 『東洋漢文學研究』 19, 2004.
劉權鍾, 『동양한문학회 제82차 학술발표회자료집』, 2005, 2, 18.
김문택, 「16~17세기 安東 順城李氏家 墓祭 양상과 儒學的 이념」, 『古文書研究』
26, 2005.

Abstract

Hakbong(鶴峯) Kim, Sung-il(金誠一)'s thoughts and performance
of the memorial services for the ancestors(祭禮)

- by examining a collection of HakBong's works(鶴峯集) and the old
documents(古文書) of CheonJeon Clan from the Kims of UiSeong(義城金氏 川前派) -

Yu, Young-O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is thoughts and performance of the memorial services for the ancestors(祭禮) by examining a collection of HakBong's works(鶴峯集) and the ancient documents of CheonJeon Clan(川前派) out of the Kims of UiSeong(義城金氏). This study will be a help for studying in Toegye(退溪)'s school by examining the courtesy scriptures theory(禮學) of Hakbon, Toegye's disciple.

Hakbong also attached importance to the memorial services for the ancestors under the influence of his father, who devoted himself to an ancestor worship and a protection of the original family(宗家) getting ready for expenses of the memorial services for the ancestors.

Hakbong tried not only to value books of the courtesy scriptures theory but also to accept manners and national institutions of those days. This idea is a characteristic of Toegye's courtesy scriptures theory. Hakbong set up his courtesy scriptures theory through questions and answers with Toegye, his master.

The memorial services for the ancestors in Garae(『家禮』) was mainly divided into three forms, the seasonal service(時祭), the memorial service(忌祭), and the tomb service(墓祭). Garae treated the seasonal service, which performed in shrine, as the most important service but did the tomb service, which performed for ancestors of older generation who didn't perform memorial services any longer, as the most unimportant service. Garae also prescribed to perform the memorial services for ancestors of four generations. But, in Chosun(朝鮮) of those days the tomb service was attached more importance than the seasonal service, the memorial services were performed for ancestors of three generations, and the memorial services were sometimes performed in turn.

When he drew up 'the rules of the memorial services('奉先諸規')', Hakbong attached importance to the seasonal service and performed the tomb service once a year on the basis of Garae. He also prescribed to perform the memorial services for ancestors of four generations according to the principle that the customary formalities must be generous. In other hand, he observed 'four Big Holidays(4名日: 正朝·寒食·端午·秋夕)' and accepted the memorial services which performed in turn, according to custom, culture and institutions of those days. In conclusion, Hakbong tried to harmonize books of the courtesy scriptures theory with popular manners.

Key Word

Hakbong, Toegye, the old documents of CheonJeon Clan from the Kims of UiSeong, the rules of the memorial services, Garae, the seasonal service, the tomb service, the memorial services for ancestors of four generations